

31.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정 : 1974. 9.
개정(제28차) : 2025. 6. 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 학칙 제7장(학위논문)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각 학위과정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논문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1. 석사학위과정

가.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생

나.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및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1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학생

다. 입학일로부터 4년(8학기) 이내 학위논문의 심사 완료 예정 학생

2. 박사학위과정

가.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생

나.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및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학생

다. <삭제>

라. 입학일로부터 7년(14학기) 이내 학위논문의 심사 완료 예정 학생

3. 석·박사 통합과정

가.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생

나.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및 논문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고 논문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학생

다. <삭제>

라. 입학일로부터 8년(16학기) 이내 학위논문의 심사 완료 예정 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학 및 제적기간, 그리고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한 기간은 각 학위과정의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논문작성 언어 및 규격) ① 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한국어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삭제>

1. <삭제>

2. <삭제>

③ 석사학위논문의 규격은 [별표1, 2]에 따른다.

④ 박사학위논문의 규격은 [별표1, 2] 및 논문작성 언어에 따라 해당 호를 따른다.

1. 영어로 작성할 경우 2쪽 내외의 영문요약 및 국문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 2쪽 내외의 논문작성 언어로 된 요약과 영어요약 및 국문요약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한국어로 작성할 경우 2쪽 내외의 국문요약 및 15쪽 내외의 영문요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① 우리 대학교의 교수, 부교수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는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②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2(논문지도비) <삭제>

제5조 (학위논문 원고 제출) <삭제>

제6조 (논문제출 자격심의) <삭제>

제7조(심사위원 선정)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논문지도교수가 추천하여 주임교수가 승인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위원으로 최종 선정한다.

1. 석사학위논문: 3인

2. 박사학위논문: 5인

② 심사위원의 자격은 제4조에 규정한 논문지도교수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③ 외부 심사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석사학위 심사위원 중 1인, 박사학위 심사위원 중 2인까지 선정할 수 있다. 단, 학과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외부 심사위원의 추가 위촉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명 이내에서 학과 심의를 거쳐 추가 위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같은 조 제1항의 심사위원 변경이 필요하거나 제3항의 추가 위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간(본심사 시행 이전) 이내에 심사위원 변경 및 추가 위촉을 요청해야 한다.

⑤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심사위원을 초과하는 위원은 자문위원으로 하고, 자문위원의 논문심사비는 본교 「논문심사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심사위원장) 주임교수는 심사위원 중에서 우리 대학교 소속 전임교원 1인을 심사위원장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장은 의결권에 있어 심사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제9조(학위논문심사) ① 학위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한다.

② 학위논문심사를 위하여 석사학위과정생은 3부, 박사학위과정생은 5부를 작성하여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기간 내에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논문심사에 앞서 표절검사를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표절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학과 및 학과간 협동과정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④ 학위논문심사 방법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 원고를 면밀히 검토한다.
2. 학생은 심사위원 참석 하에 공개 발표회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 또는 방청자는 논문발표자에게 논문에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있다.

⑤ 논문심사보고서 제출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예비심사 이후,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심사 이후,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을 기재한 본심사보고서를 지정된 기간 내에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본심사 합격 기준) 석사학위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박사학위논문은 4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80점/100점 이상으로 평가를 한 경우 합격으로 한다.

제9조의3(학위논문의 재심사) 학위논문 심사(예비심사 및 본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수정 보완한 논문을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단, 전 심사과정에서 총 2회 불합격 판정(예비심사, 재심사 불합격 판정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과정 수료 처리된다.

제10조(논문 예비심사 판정) <삭제>

제11조(학위논문 인준) 학생은 논문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지시한 수정·보완 사항을 이행하여 최종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의 수정·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학위논문을 인준한다.

제12조(학위논문의 체제) <삭제>

제13조(학위논문 제출 방법) 학위논문 인준을 받은 학생은 대학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완성된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논문심사료) <삭제>

제15조(학위논문의 심사) <삭제>

제16조(논문평가 방법) <삭제>

제17조(학위논문의 재심사) <삭제>

제17조의2(재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학위논문 재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9조의3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사전에 정한 심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심사위원 선정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3. 기타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경우

② 이의제기는 학기 만료 직전 학기까지 신청 가능하며, 학기 만료 학기에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

③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 재심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심

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이의심사위원회 구성)

- ① 제17조의2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대학원장은 심의를 위해 이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의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 ② 이의심사위원회는 학내 교원 3명과 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하며, 이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 ③ 이의심사위원회 교원 위원은 대학원장이 이의제기 사안에 따라 심의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교원 중에서 위촉한다. 단, 이의제기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교원은 위원에 포함될 수 없다.
- ④ 이의심사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처리 기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제17조의4(이의제기 절차)

- ①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학위논문 재심사 결과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신청서, 이의제기사유서 및 기타 증빙 서류를 이의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이의심사위원회는 해당 학위논문에 대한 추가 재심사 여부를 심의·결결한다.
- ② 대학원장 또는 이의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시 학과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논문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소속 대학장의 출석을 요청하여 소명 기회를 제공하거나 참고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이의심사위원회는 제17조의2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과에 해당 학위논문에 대한 추가 재심사를 요청한다. 단, 학과의 추가 재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④ 제17조의2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심의 요청은 기각될 수 있으며, 심의 재요청은 불가능하다.
- ⑤ 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최종적이며, 대학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학생, 지도교수, 학과 주임교수 및 소속 대학장에게도 심의 결과를 통지한다.

제18조(최종 구술시험) <삭제>

제19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본 내규는 1974년도 제2학기부터 발효한다.
(경과조치) 1. 본 내규는 구제학위 신청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2. 1962년도 제2학기에서 1973년도 제2학기간에 과정에 입학한 박사학위 학생은 본 내규 제2조 나.항 제5절에 불구하고 논문심사 완료일을 12년으로 한다.
3. 1962년도 제1학기 및 그 이전에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본 내규 제

2조 나.항 5절에 불구하고 논문심사 완료일을 1974년도 제1학기말까지로 한다.

- ② 본 내규 중 제12조는 1975년도 제1학기부터 실시한다.
- ③ 본 개정내규는 1976년도 제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④ 본 개정내규는 1991학년도 제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⑤ 본 개정내규는 1993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 ⑥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1994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⑦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13조)는 1995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본 내규 중 제2조는 1995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⑧ 이 개정내규(제4조)는 1996학년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⑨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5조)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⑩ 이 개정내규(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⑪ 이 개정내규(제4조의2, 제7조)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⑫ 이 개정내규(제13조, 제14조)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⑬ 이 개정내규(제7조, 제14조)는 2001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 ⑭ 이 개정내규(제5조, 제7조 제5호, 제13조, 제17조)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⑮ 이 개정내규(제3조)는 2006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⑯ 이 개정내규(제7조 제5호)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⑰ 이 개정내규(제3조 제2항)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⑱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조, 제4조의2, 제7조 제3호, 제8조, 제17조)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⑲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2조 다의 3호)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⑳ (시행일) 이 개정 내규 (제7조 제4호)는 2015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㉑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 제2항)는 2015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 ㉒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29 제2항)는 2016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 ㉓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4조의2, 제13조)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㉔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7조의3)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㉕ (시행일) 이 개정 내규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4는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㉖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및 제9조의2, 제9조의3 신설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㉗ (시행일) 이 개정내규 제17조의2는 2024년 3월 12일부터 적용한다.
- ㉘ (시행일) 이 개정내규 그림4, Appendix 3는 2024년 6월 15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3조2항)는 2024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5. 6.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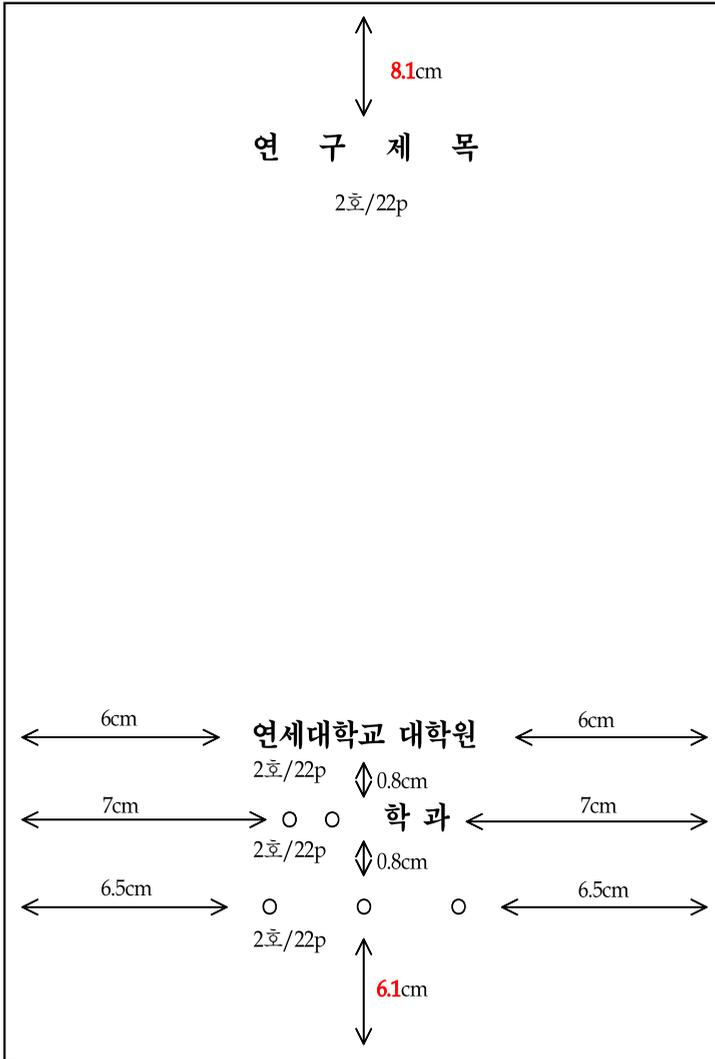
㉩ (시행일) 이 개정 내규(제3조, 제7조, 『별표』, 『별표2』)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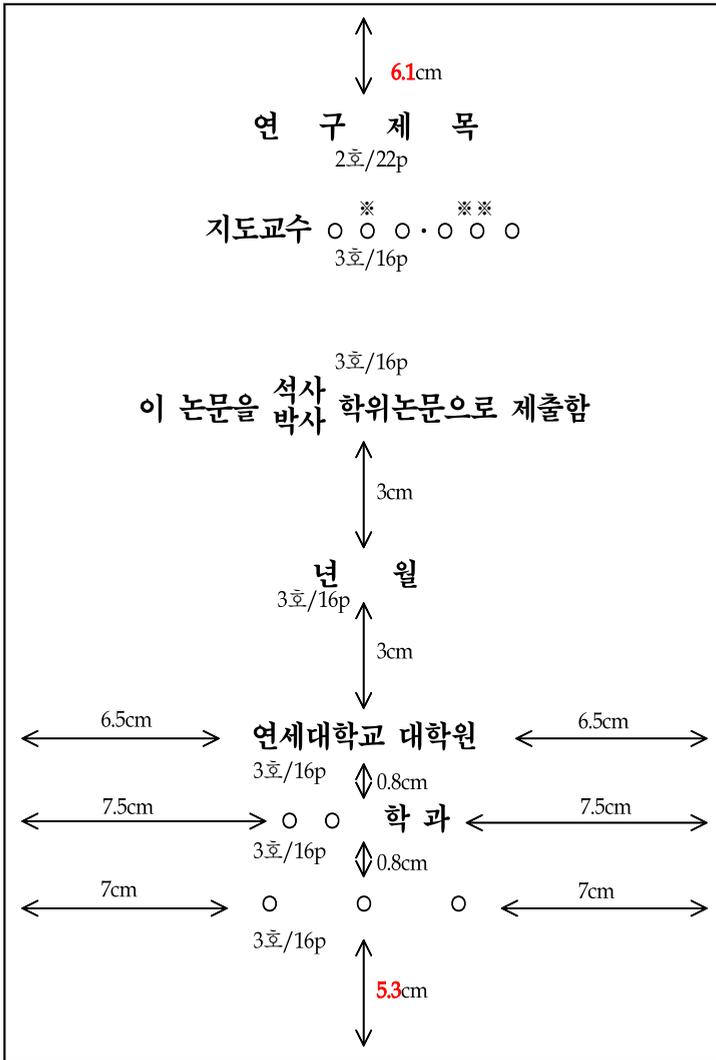
<국문학위논문 체제>

1. 표지 양식 : [그림 1]에 따른다.
2. 제출서 양식 : [그림 2]에 따른다.
3. 인준서 양식 : [그림 3]에 따른다.
4. 논문이 반드시 갖출 사항과 순서
 - 가. 표지
 - 나. 제출서
 - 다. 인준서
 - 라. 감사의 글
 - 마. 차례(수표 또는 도표 차례 포함)
 - 바. 국문요약(2쪽 이내)
 - 사. 본문[그림 5 참조]
 - 아. 참고서적 목록
 - 자. 부록, 색인, 기타 (있을 경우)
 - 차. 영문요약(2쪽 이내)
5. 논문 편제 및 서술 방식은 연세대학교 연구처 논문작성연구위원회 편 『새논문 작성법』(연세대학교 출판부 발행)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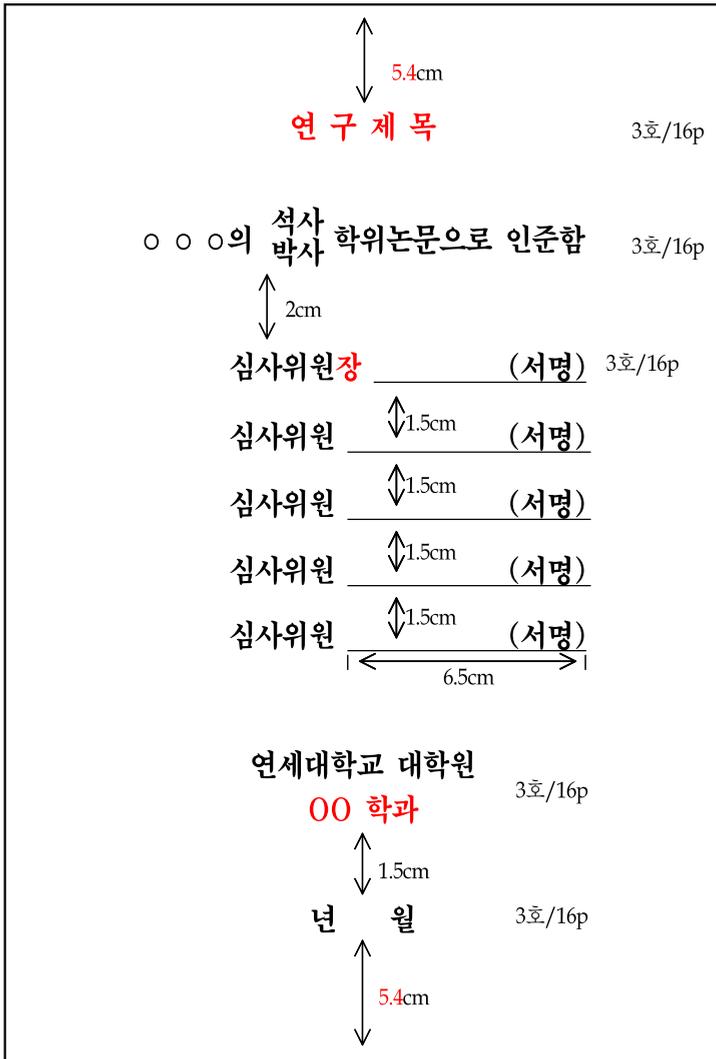
[그림 1] : 표지 양식



[그림 2] : 제출서 양식



[그림 3] : 인준서 양식



『별표 2』

<영어학위논문 체제>

※ 자세한 내용은 Guidelines for Preparing Thesis in English 참조
[Appendix 1 : Sample Cover page]

Women and the War Effort:
O O O O O O [Thesis Title] (18p)

Sung, Chunhyang [Author Name] (18p)

Department of [Department nam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18p)

[Appendix 2: Sample Title page]

Women and the War Effort:
O O O O O O [Thesis Title] (16p)

Advisor O O O * O O O [Advisor Name]

A [Dissertation/Master's Thesis]
Submitted to the Department of [OOO]
and the **Committee 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OOO / Master of OOO] [Name of Degree to be
Obtained] (16p)

Sung, Chunhyang [Author Name] (16p)

[Month / Year of Submission] (16p)

[Appendix 3: Sample Signature page]

Women and the War Effort: O O O O O O [Thesis Title] (13p)

This Certifies that the [Dissertation /Master's Thesis] of [Sung, Chunhyang] is Approved (13p)

Committee Chair: [signature] (13p)
Hong, Gil dong

Committee Member: [signature]

Committee Member: [signature]

Committee Member: [signature]

Committee Member: [signature]

(three signatures total in case of masters)

Department of [Department nam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13p)

[Month / Year of Approved] (13p)